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율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40종)			제3조(종류 및 요액)(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39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가~다(생략)			가~다(현행과 같음)		
라. 마약에 관한 사항 (1)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1건	100원	“라”목 삭제	삭 제	삭 제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삭 제		
제7조(징수시기)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7.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7월 16일 제65회(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98. 1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조직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사용 용도중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항)
-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지출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서울시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이나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협의후 '98. 11. 1일부터는 판매대금은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쓰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과 우리구의 행정조직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직제나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년월일 : 1999. 7. 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98.10.12)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98. 1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조직설치조례개정('98.10.9)에 따른 직제 및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사용 용도중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호)
- 나.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항)
- 다.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지출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생략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과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①현행과 같음 ②——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③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사용)	①생략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제6조	①현행과 같음 ②—— —— 삭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삭제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